

# 2024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용자지원 계획 공고

『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2024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용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2. 29.

충청남도지사

□ 신청기간 : '24. 1. 2 ~ 12. 31. (연중)

## □ 용자대상

- 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

- ①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**사회적기업**
- ②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8조 또는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**예비사회적기업**
- ③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**마을기업 (예비마을기업 포함)**
- ④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**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**
- ⑤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8조에 따른 **자활기업**. 단 **법인 기업에 한함**

## □ 용자조건

구분	신용	담보
용자한도	최대 1억 5천만원	최대 3억원 (LTV*한도 내)
용자기간	5년 이내	10년 이내
용자금리	<b>5.8% (1분기)</b>	<b>5.4% (1분기)</b>
	※ 분기별 변동금리	
이자지원	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<b>24개월 간, 3%</b>	
상환방식	원금 분할상환(거치기간 최장 1년)	일시상환 / 분할상환 선택가능
비고	•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,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* LTV : 담보가치인정비율	

※ 용자 실행 이후라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위를 상실한(법인전환, 인증 및 지정 만료 등) 경우 사회적경제기금의 지원을 중단

## □ 평가방법

- 3천만원 초과 용자 :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
- 3천만원 이하 용자 : 소액·간편 용자 서류심사

## □ 신청방법

- **(3천만원 초과용자)**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\*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 
(중개기관을 '신협중앙회'로 선택)

\* <https://www.kodit.co.kr/seenp/index.do> 또는  
<https://www.kodit.co.kr> → '신보On-Blz' 이동 → '사회적경제기업평가' → '평가관리' 이동

- **(3천만원 이하용자)** 아래 서류를 이메일([socialeconomy@cu.co.kr](mailto:socialeconomy@cu.co.kr))로 송부 (신협 담당자 별도 연락 예정)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(붙임1)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

### 제출서류

- |  |  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정관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<li>▶ 법인등기부등본</li><li>▶ 차입 관련 이사회(주주 총회) 의사록</li><li>▶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·지정서</li>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사업계획서, 재무제표</li><li>▶ 매출액 확인자료</li><li>▶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</li><li>▶ 금융거래 확인서</li><li>▶ 주주(조합원) 명부</li></ul>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직전 사업보고서((예비)사회적기업) 또는 경영공시 보고서((사회적)협동조합) 사본</li></ul> <p>* 협동조합은 별도문의, 관련 첨부서류는 미제출</p>              |   |

※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

## □ 문의사항 안내

-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(041-635-3323)
-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(042-720-1293)
-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(041-406-8129) \* 교육, 컨설팅, 상담 등

붙임 :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취급신협 영업점 현황 1부. 끝.

**붙임****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취급신협 영업점 현황**

시군	신협 명	연락처
천안시	천안우리신협 (본점, 서북구 성성동)	041)563-4455
	천안제일신협 (본점, 서북구 삼은리)	041)583-2086
	천안신협 (본점, 동남구 오룡동)	041)567-7311
공주시	공주중앙신협 (본점, 중동)	041)855-1201
보령시	대천신협 (본점, 동대동)	041)930-7000
아산시	아산신협 (본점, 배방읍)	041)549-1475
서산시	서산신협 (본점, 동문동)	041)664-3651
논산시	화지산신협 (본점, 취암동)	041)733-3451
당진시	당진신협 (본점, 읍내동)	041)353-1212
	당진우리신협 (본점, 읍내동)	041)354-0167
	서해중앙신협 (본점, 신평면)	041)362-2811
계룡시	화지산신협 (계룡지점, 엄사면)	042)841-4311
금산군	금산신협 (본점, 금산읍)	041)753-3661
부여군	부여신협 (본점, 부여읍)	041)832-8799
서천군	서천신협 (본점, 서천읍)	041)953-0051
청양군	청양신협 (본점, 청양읍)	041)943-2603
홍성군	홍성신협 (본점, 홍성읍)	041)633-8884
	풀무신협 (본점, 홍동면)	041)633-6221
예산군	내포신협 (본점, 덕산면)	041)337-0051
	예산신우신협 (본점, 예산읍)	041)331-2228
	예산중부신협 (본점, 오가면)	041)333-9925
태안군	반도신협 (본점, 태안읍)	041)673-9141